#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3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정청래・양이원영・문정복

이용빈 · 윤미향 · 신정훈

조오섭 • 박홍근 • 윤관석

김남국 · 오영환 · 안규백

고영인 · 김민석 의원

(14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약 5,500명의 의회 사무직 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있게 의회 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항).
- 나.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 다. 시·도 단위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02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다"를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도에"를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장등은 각각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위원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을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로, "시·군·구"를 "시·도의회의 사무처장, 시·군·구"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및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국장급"을 "국장급(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장등"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25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

다.

제27조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29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를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시·군·구 및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 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④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도인사위원회"를 "시·도인사위원회(의회직 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다)"를 "같다) 및 시·군·구의회의 의 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시· 군·구의회의 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 으로 한다.

제39조제5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시·군·구의회의 의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으로, "시장·군수와"를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회의 의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도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도 단위로 실시한 의회직렬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제39조의2제2항 중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제6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 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로한다.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장등"으로 한다.

제81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의장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	제6조(임용권자) ①
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u>같다</u> )은 이 법	<u>같다) 및 지방의회</u>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의 의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	<u>등"이라 한다)</u>
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임	
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u>지방자치</u>	지방자치
<u>단체의 장</u> 은 공무원의 인사관	단체장등
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	
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	
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 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 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⑥ ~ ① (생 략)
-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관장한다.
  - 1. ~ 4. (생 략)
  - 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 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 안의 사전심의
  - 6. 7. (생략)
  - ② ~ ④ (생 략)
- 사위원회에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 • 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 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 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 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

- 1. ~ 5. (현행과 같음)
- ⑥ ~ ①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 5.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제출 되는 -----

- 6. 7.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도의회의 사무처장, 시·군 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 ·구---- 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 ④ (생 략)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
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
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
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
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
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7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 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 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 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장등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u>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u>
육소청심사위원회 및 지방의회
소청심사위원회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 (생 략)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 같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2. (생략)
- 3.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 ③ (생략)
-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⑤ ~ ⑦ (생 략)⑤ ~ ⑦ (현행과 같음)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현행과 같음)
2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
도의회의 의장
1. • 2. (현행과 같음)
3 <u>국장급(지방의회소청심</u>
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과장급)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 교육감 또는</u>
<u>시·도지사, 교육감 또는</u> <u>시·도의회의 의장</u>
시·도의회의 의장
시·도의회의 의장
시·도의회의 의장
시·도의회의 의장

① (현행과 같음)

- ① (생략)
- ② 간사와 서기는 <u>시·도지사</u> <u>또는 교육감</u>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생략)
-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
  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신으로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 ② (생략)
-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u>지방자</u> <u>치단체의 장</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 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 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

	② <u>시·도지사,</u>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의 의
	<u> 장</u>
	③ (현행과 같음)
제	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u>시·도</u>
	지사, 교육감 또는 시·도의회
	의 의장
	② (현행과 같음)
제	23조(직위의 정급) ① <u>지방자</u>
	<u>치단체장등</u>
	<u>.</u>
	② 지방자치단체장등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 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 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의 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국가안보 및 보안 ·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b>.</b>
제25조(임용의 기준)
<u>지</u>
<u>방자치단체장등</u>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의 임용) ① <u>지방자치단체장등</u> -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의 임용) ① <u>지방자치단체장등</u> -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의 임용) ① <u>지방자치단체장등</u> -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의 임용) ① <u>지방자치단체장등</u> -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 제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신규임용) ① ~ ⑤ (생략)

⑥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제2항 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
용) <u>지방자치단체장등</u>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
용하는 공무원) ① <u>지방자치단</u>
<u>체장등</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임용)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u>지방자치단체장등</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 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 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 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 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등
0 1 9 1 7 1 0 7 1 7 1 1 7 1 0 0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 지방자치단체장등
جا ہا جا حالت ا
<u>지방자</u>
<u>치단체장등</u>
②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 의장은 해당 시·도, 관할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구역의 시·군·구 및 해당 시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 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 · 도에 두는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 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 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 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 | 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 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 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 규 칙으로 정한다.

<신 설>

·도 또는 관할 구역의 교육·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 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제2항에 따른 인사 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 조례로----.

④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 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7 7 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해당 <u>시·도인</u> 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 ② ~ ⑤ (생 략)
- 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u>같</u>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u>시·도인사위</u>
원회(의회직렬의 경우에는 해
당 시 · 도의회의 인사위원회를
<u>말한다. 이하 같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같다)</u>
<u>및 시·군·구의회의 의장</u>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장등

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 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 같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 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 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u>지방자치단</u> 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 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부 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 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 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② <u>시장·군수·구청장</u> 및 제6 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

②
<u>시·도지사, 교육감 및</u>
<u>시·도의회의 의장</u>
③ ~ ⑤ (현행과 같음)
<b>6</b>
<u>지방자치단체장</u>
<u>등</u>
<u>,</u>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u>지방</u>
자치단체장등
② <u>시장·군수·구청장, 시·</u>
<u>군·구의회의 의장</u>

을 받은 자가 공무원을 신규임 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u>지방자치단체의</u>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 ④ (생 략)
  -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 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 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 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 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 ·도 및 시·군·구 소속 기술 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 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 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지방자치단체
<u>장등</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5

는 바에 따라 시·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 1.·2. (생략) <신설>

<u>있</u> 고,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회와 시·
군·구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
원에 대하여 시·군·구의회의
의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
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u> 바에 따라 시·도 단위별
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
<u> </u>
시장・군수 또는 시・군
의회의 의장과
⑦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도
<u> 의회의 의장</u>
1. • 2. (현행과 같음)
3. 시·도 단위로 실시한 의회직
력 5급 이하 곳무워ㅇ로의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 제3 (생 략)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 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 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 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 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 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 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 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 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 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 자를 결정한다.

③ • ④ (생 략)

일반승진시험에	합기	격한	사	람
의 승진후보자 「	<u> 경부</u>			
39조의2(승진시험.	의	방법)	)	1
(현행과 같음)				

② <u>제39조제5항</u>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로 근무하게할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저 (생 략)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경우에는 재임용한 <u>지방자치단</u>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자치단체장등
②・③ (현행과 같음)
세66조의2(명예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ス]
망자치단체장등
지방자치단체
장등
 1. ~ 3. (현행과 같음)

- ④·⑤ (생략) 제74조(훈련) ①·② (생략)
  -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u>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 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 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생 략)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 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 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 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 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

④·⑤ (현행과 같음)
제74조(훈련) ①・② (현행과 같
으 )
③ 지방자치단체장등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장등
② 지방자치단체장등
③ 지방자치단체장등

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한다.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에 관한 지도·감독)
<u>시·도지사 또는 시·</u> 도의회 의장은